

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
2021년 10월 5일

부산광역시장

1.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사항

1) 처분당사자
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
-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2) 처분내용 :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

※ 변경사항 청색 표기

1.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이행

* 신규 종사자는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

* 예방접종완료자는 2주에 1회, 예방접종미완료자는 시설 전체(입소자 및 종사자)의 예방접종률 75% 미만인 경우 매주 1회, 75% 이상인 경우 2주에 1회

2.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

3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,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

4. 신규 환자(입소자)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입원(입소) 시행 ▶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

5. 외부인 출입통제, 입소자의 외출·외박 및 면회 등은 「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 기관 대응 지침」 단계별 지침에 따름

6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,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(시스템 및 별도 서식)

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7.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(간병인)는 업무배제(출근금지), 환자(입소자)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
3) 처분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제49조, 제83조

4) 처분사유 : 지역사회와 감염 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

5) 처분기간 : 2021. 10. 5.(화) ~ 별도 변경 시까지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10. 5.(화) 부터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5. 문의처(처분 담당자)

구 분	소 속	직 급	이 름	비 고
노인의료복지시설	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	지방행정주사	이지현	☎ 888-3274
양로시설	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	지방행정주사보	이동현	☎ 888-3271
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	지방행정주사보	이동현	☎ 888-3271